

#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0월10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### □ 제안이유

- 원미구의 인구 및 행정수요 급증과 관련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1항 시·군·구의 기구설치 기준 가운데 인구 30만 이상 일반구는 8개과 이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과 8명을 정원 승인(2003. 8. 26.) 받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총 정원 : 1,967명
  - 집행기관 : 1,933명 → 1,941명(+8)
  - 의 회 : 26명
- 정원 증원 : 8명
  - 행정·토목5급 1, 행정·토목·건축6급 1, 보건6급 1, 행정7급 1, 보건8급 1, 토목·건축8급 1, 행정9급 1, 기능운전10급 1
-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

기 관 별	당 초	변 경	증·감
계	1,959명	1,967명	+8
집 행 기 관	1,933명	1,941명	+8
의 회	26명	26명	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#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2호
의결 년월일	2003.10.15 (제107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원미구의 인구 및 행정수요 급증과 관련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시·군·구의 기구설치 기준 가운데 인구 30만이상 일반구는 8개과이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과 8명을 정원 승인(2003. 8. 26.) 받음에 따라,
- 집행기관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총 정원 : 1,967명
  - 집행기관 : 1,933명 → 1,941명(+8)
  - 의 회 : 26명
- 정원 증원 : 8명
  - 행정·토목5급 1, 행정·토목·건축6급 1, 보건6급 1, 행정7급 1, 보건8급 1, 토목·건축8급 1, 행정9급 1, 기능운전10급 1
-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

기 관 별	당 초	변 경	증·감
계	1,959명	1,967명	+8
집행기관	1,933명	1,941명	+8
의회	26명	26명	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1,959명”을 “1,967명”으로 하고,  
동조제1호중 “1933명”을 “194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<u>1,959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933명</u> 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)----- <u>1,967명</u>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1,941명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